

#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주요 변경사항

#### 유럽연합, 식료품과 접촉하는 합성물질 목록의 수정

- 유럽식품안전청은 규정 (EU) Nr.10/2011의 수정 이후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로 허용되는 새로운 물질 및 이미 허용된 물질의 사용에 대한 과학적인 입장을 표명해 옴. 이와 함께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모호함이 확인됨. 따라서 이 규정의 과학성과 기술적 진전의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유럽식품안전청의 가장 최신의 조사 결과가 고려된 규정으로 수정됨.
- 물질 '목분(wood flour), 나무섬유(wood fibers), 천연 나무(untreated)'(FCM No 96, 총칭 'wood')(이하 "wood") 의 승인 취소. 식품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Food)의 평가와 달리 유럽식품안전청은 wood가 불활성(inert) 물질이라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검증하지 못함. wood가 함유한 많은 저분자 물질 때문에 목재 자체가 불활성으로 간주 될 수 없다고 봄. 경우에 따른 식물성 물질의 다양한 화학적 합성을 근거로 (식물성인) wood가 포함된 플라스틱 물질로부터 식품으로 전이되는 성분의 안전성이 이제는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
- 물질 살리실산(FCM No 121, 'salicylic acid')의 승인 취소. 유럽식품안전청은 이 물질의 사용자, 사용의 의도된 형태 또는 이 물질이 사용된 품목 없이는 평가 불가함. 따라서 살리실산의 알려진 특정된 사용 또는 사용자가 없어 승인취소됨.

- 프탈레이트(phthalates)로 알려진 5개의 물질 FCM No 157 (‘DBP’), FCM No 159 (‘BBP’), FCM No 238 (‘DEHP’), FCM No 728 (‘DINP’), FCM No 729 (‘DIDP’)이 사용과 전이 한계의 특정한 제약을 조건으로 승인. 유럽식품안전청은 DBP, BBP, DEHP 그리고 DINP를 위한 그룹 임시 일일 최대섭취 허용량(group temporary tolerable daily intake, group t-TDI)을 50 (µg/kg bw)으로 DIDP를 위한 단독 t-TDI를 150 (µg/kg bw)으로 설정함. 또한 유럽식품안전청은 DBP, BBP, DEHP 그리고 DINP의 통합적 식이 노출을 평균소비자의 경우 group t-TDI 50 (µg/kg bw)의 최대14%에 상위소비자의 경우 23%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음. DIDP의 식이 노출은 평균 소비자와 상위 소비자 모두의 경우 t-TDI 150 (µg/kg bw)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 함. 이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FCM에서의 이 프탈레이트들의 노출이 group t-TDI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 특정 전이 한계 (total specific migration limit, SML(T))가 지켜져야 함. 또한 이 프탈레이트 중 하나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 개별적 SML 또한 지켜져야 함.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3.177.01.0045.01.ENG&toc=OJ%3AL%3A2023%3A177%3ATOC](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3.177.01.0045.01.ENG&toc=OJ%3AL%3A2023%3A177%3ATOC)

## 2. 시사점

- 위 개정안은 2023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다만 2025년 2월 1일 이전에 이 규정의 발효 이전에 처음에 시장에 출시된 규정(EU) No 10/2011을 준수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장에 잔류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서 관련 식품 접촉 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은 수정된 값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1. 통관동향 등 이슈

#### 유럽연합, 특정 식료품의 니코틴의 최대잔류허용수준 수치 수정

- 위원회는 2005년 위원회 규정 No 396/2005에서 동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을 포함한 살충제의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수준(Maximum Residue Level, MRL) 설정한 바 있음. 이후 유럽식품안전청은 아일랜드로부터 니코틴의 기존의 MRL의 설정을 위해 사용된 아일랜드 자료에서 고려된 위험의 과대평가 등의 문제를 전달받음. 이에 당국은 아일랜드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니코틴의 MRL로 수정하기로 함.

### 2. 변동사항

- 차(tea)의 니코틴의 임시 최대 잔류 허용 수준 ( temporary MRL, tMRL): 기존 0,6 mg/kg 에서 0,5 mg/kg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 2025년 6월 30일 자에 제출되는 새로운 자료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2026년 2월 22일 후에 0,4 mg/kg 수준으로 더 낮추기로 함. 유럽식품안전청은 기존의 MRL로 부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확인했기 때문에 MRL의 수정전에 생산된 차에 대한 잠정적 규정은 제공되지 않음.
- 장미 열매(rose hip)의 니코틴의 tMRL: 기존 0,3 mg/kg 에서 0,2 mg/kg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 유럽식품안전청은 기존의 MRL로 부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MRL의 수정전

에 생산된 장미 열매에 대한 잠정적 규정은 제공되지 않음.

- 씨앗 향신료(seed spices)와 과일 향신료(fruit spices)의 니코틴의 tMRL: 2030년 2월 22일까지 0,02 mg/kg 수준으로 설정. 위원회는 유럽 참조 연구소로부터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한계측정치 (a limit of determination, LOD) 0,05 mg/kg에 대한 정보를 받음. 따라서, 이 MRL은 새로운 자료와 정보의 평가 그리고 제안을 기다리며 재검토되고 이는 추후에 이용가능하게 고려 될 것임.
- 계피(cinnamon)의 니코틴의 tMRL: 0,07 mg/kg 수준으로 설정. 최근 잔류량이 설정값 0,07 mg/kg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관측자료가 위원회에 제출됨. 이 더 특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표본 결과의 95 백분위수에 상응하는 0,2 mg/kg 가 tMRL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이 MRL은 재검토될 것이고 이는 2030년 2월 22일까지 추가적인 관측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고려할 것임.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3.187.01.0006.01.ENG&toc=OJ%3AL%3A2023%3A187%3ATOC](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3.187.01.0006.01.ENG&toc=OJ%3AL%3A2023%3A187%3ATOC)

### 3. 기타 주의사항 등

- 변경된 규정은 차(tea)를 제외하고 2023년 9월 15일부로 시행됨. 차는 2023년 9월 14일부로 시행됨.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일 이후 위에 언급한 대로 MRL의 수정전에 생산된 차와 장미 열매에 대한 잠정적 규정은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위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변경된 수치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과 적용일로부터 위의 규정을 엄수할 것이 요구됨.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8월) 보고된 사례 없음**

- 참고 번호 2023.5494 : 한국산 건조 미역,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독일 국경 검역소에서 경고 조치.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